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행복한 보금자리”

카네이션요양원

수신자 : 내부결재

정 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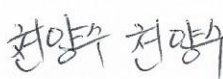
제 목 : 21년 하반기 재난상황대응훈련교육 및 훈련 실시보고

본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재난상황대응훈련 및 교육을 통하여 직원 및 수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재난상황 대응안전교육 및 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내 용 : 재난상황 대응훈련교육 및 훈련
2. 일 자 : 2021년 12월 07일~08일,14일 (08 : 40-09 : 20)
3. 장 소 : 카네이션요양원 내. 외
4. 강 사 : 양재숙시설장

담 당 :

협조자 : 

시설장 : 양재숙 

시 행 : 2021-12 - 22 호(2021.12.07.~08.14)

(우)116-10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306-14 센츨럴프라자 5층

T E L : 031) 829-1307/FAX : 031)829-1308

B.G : 카네이션요양원 (<http://blog.naver.com/gp010910/220887785779>)공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행복한 보금자리”

카네이션요양원

수신자 : 내부결재

경 유 :

제 목 : 21년 하반기 재난상황대응교육 및 훈련 결과보고

본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통하여 직원 및 수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재난상황 대응안전교육 및 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합니다.

- 다 음 -

1. 내 용 : 재난상황 대응훈련교육 및 훈련
2. 일 자 : 2021년 12월 07일~08일.14일 (08 : 40-09 : 20)
3. 장 소 : 카네이션요양원 내. 외
4. 강 사 : 양재숙시설장
5. 참석자 : 양재숙시설장외6명

- 붙임 : 1. 재난상황 대응훈련교육및훈련 자료및교육내용 1부
2. 재난상황 대응훈련교육및훈련 사진 1부
3. 재난상황 대응훈련교육및훈련 명단 1부

담 당 :

협조자 : 

시설장 : 양재숙 

시 행 : 2021-12 - 22 호(2021.12.07.~08.14)

(우)116-10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306-14 센츨럴프라자 5층

T E L : 031) 829-1307/FAX : 031)829-1308

B.G : 카네이션요양원 (<http://blog.naver.com/gp010910/220887785779>)공개

재난상황 대응훈련 및 교육 일지

공동 (14115000529)

교육명	훈련 및 교육	참석자	수급자의 직원
교육일시	21.12.07~08,14일 (08 : 40-09 : 20)	교육장소	당원 내 . 외
강사	양재숙시설장		
교육내용	양재숙시설장 : 안녕하세요 ,2021년 하반기 재난 상황 대응훈련 및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 네 양재숙시설장: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훈련 및 교육입니다. 선생님들: 네. 양재숙시설장: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건조 하고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불을 사용 할 때만 조심 할것이 아니라 전기로 인한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콘서트는 꼭 돼지코를 끼어 넣어야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를 만지면 안되며.전자렌지를 사용 할 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용기 역시 절대적으로 사용 해서는 안되는 것 아시죠? 선생님들: 네 양재숙시설장: 화재가 발생을 하면 자동 화재 속보기에서 소방서로 바로 연결 이 됩니다.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난 것을 알리고 화재진압을 하는 것이 먼저이며 비상구를 통해 대피를 하도록 합니다.주방에 동그란 것이 천장에 부착 되어있는데 이것이 분말 소화기입니다. 2호실에는 배연창이 설치 되어있으며 화재시에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각 기동을 보시면 빨간색 네모난 것이 보이시죠,방염포입니다. 이것을 열면 천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불이 난 곳을 이걸로 덮어서 화재를 진압 하시면 되며,옆에 있는 투명한 통은 화재 진압 투척기입니다. 이것 역시 화재가 난곳을 향해 투척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네,명심 하겠습니다. 양재숙시설장: 자 그럼 다음은 잠깐 밖으로 이동을 하실 까요, 소화전함이 있는데요 열면 호수가 있어요, 호수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호수가 꼬이지 않도록 불이 난곳 까지 길게 늘어 뜨린 후 노즐을 잡는다. 한 사람은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한 후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 해가면 불을 끕니다. 선생님들:네 양재숙 시설장: 비상구쪽으로 이동 하실꺼요. 비번을 여기다가 적어 놓기는 했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외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확인 누르고 1307 누루시면 문이 열립니다. 선생님들: 네.		

시설장:화재가 발생 했다고 당황하여 이리저리 뛰어 다니다가 더 큰 화재로 발생 할 수 있기에 신속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을 보시면 화재 업무 분담표가 있습니다.

업무 분담표를 숙지하고 계셨다가 그래로 신속하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은 화재 뿐만 아니라 폭설 ,홍수등도 속합니다. 겨울철이라 폭설이 올수 있으며 폭설로 인해 많은 피해가 해마다 발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난을 발생을 하며 안되겠지만 재난 상황이 발생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자나깨나 불조심 하여간 무엇이 됐든지간에 늘 조심 하는 것이 최고 인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 어르신들 대피하는 훈련으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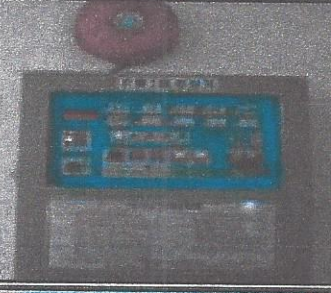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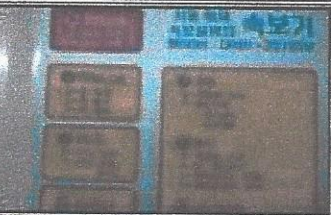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상구쪽으로 대피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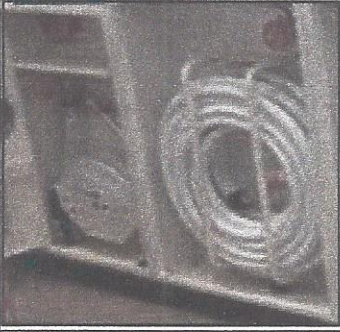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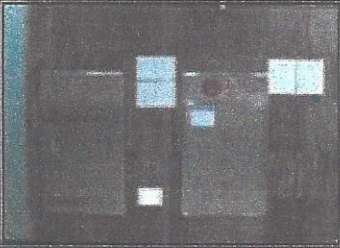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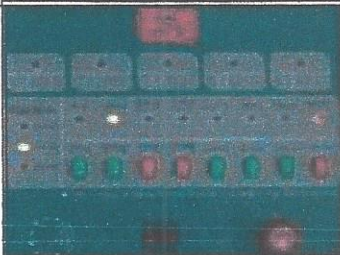
오늘도 훈련 및 교육을 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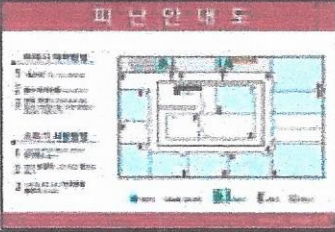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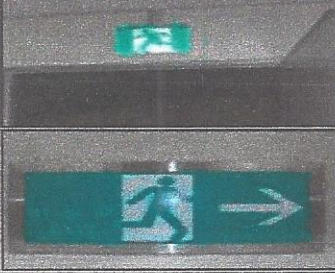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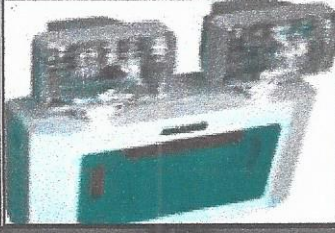
화재신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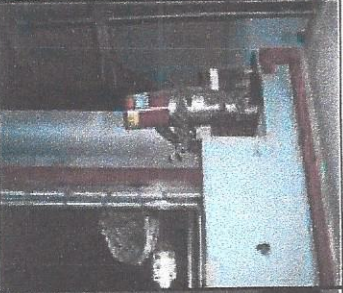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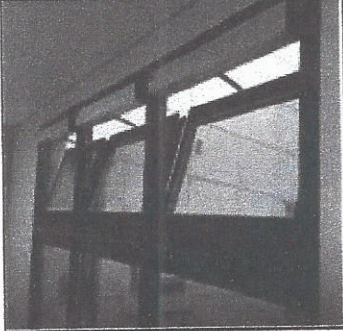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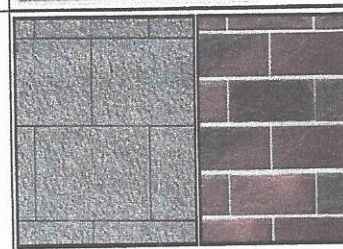
선생님들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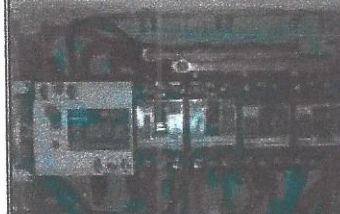
양재숙 시설장: 네 119 . 당황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잊지 마세요

분야	항목	내 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3) 소방 안전 관리	(1)		◆ 바닥면적 33㎡ 이상 각 실별로 소화기 설치 ◆ 각층마다 소형소화기는 20m 간격으로, 대형소화기는 30m 간격으로 설치 ◆ 주방이나 보일러실에는 바닥면적 25㎡마다 소화기 비치하고, 별도로 자동화산소화기 설치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 소화설비 등으로 대체 가능) ◆ 주방화재용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 소화기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NFSC101)」 참고
	(2)		◆ 소화기 압력지침이 녹색에 위치하고 있음 ◆ 머리 쪽으로 들어 흔들면 밀가루 흐르는 소리가 남 ◆ 내용연수 10년 초과 소화기 교체 필요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 참고
	(3)		◆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정상작동 됨 ◆ 전원 표시등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음 ◆ 시각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음	◆ 자동화재탐지설비 :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 시각경보기 : 노유자시설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 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 자동화재속보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정상작동 됨 ◆ 전원표시등에 불이 켜져 있음 ◆ 소방서와 바로 연결되어 있음	◆ 생활시설 및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노유자시설(24시간 상시 근무인 있을 경우 예외 인정)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음 ◆ 스프링클러 헤드가 모두 잘 보이며, 실수 반경에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음	◆ 생활시설 및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노유자시설(단,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면제)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기준」 참고

분야	항목	내 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3] 소방 안전 관리	(4)		◆ 옥내소화전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음 ◆ 소화전 함 내 호스 및 관창이 들어 있음 ◆ 구경 40mm 이상의 것으로서 시설물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의 호스를 갖추고 있음	◆ 연면적 1,500㎡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에 설치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5)		◆ 소화전 주변에 장애물이 없음 ◆ 소화전 설비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표시등이 항상 켜져 있음 ◆ 해당 시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내일 것	
	(6)		◆ 스프링클러헤드 중심으로 바닥면을 향하여 반경 60cm 이상의 공간 확보되어 있음 ◆ 실내장식 공사로 스프링클러헤드가 가려진 부분이 없음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의 천장에 누수 흔적이 없음	◆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노유자시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7)		◆ 수조의 옆면에 수위계가 있는 경우 수위계 전체 길이의 4/5 이상 유지 ◆ 수조의 맨홀 뚜껑을 열어 관찰하였을 때 물의 수위가 오버플로우관(over flow) 유입구 최소높이까지 유지 ◆ 옥내소화전 1개당 130리터*20분 소방용수 필요 ◆ 옥외소화전은 350리터*20분 소방용수 필요 ◆ 스프링클러는 80리터*20분 소방용수 필요	◆ 소방청 고시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옥내소화전 경우 최대 5개로 계산하여 2.6*5=13㎡ 수량 확보해야 함 ◆ 옥외소화전 경우 최대 2개로 계산하여 7*2=14㎡ 수량 확보해야 함
	(8)		◆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음 (주차차량 및 기타 시설물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미흡) ◆ 소화 작업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	
	(9)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면의 모든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있음 ◆ 교류전원과 정상전원(직류 24볼트)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음 ◆ 화재 표시등에 불이 꺼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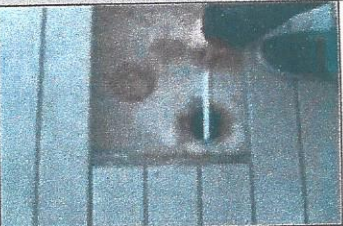
분야	항목	내 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3] 소방 안전 관리	(10)		◆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 받음 ◆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상황 소방서로 통지함 ◆ 녹음상태를 확인하여 정상여부 확인	◆ 소방청 고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11)		◆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피난안내 지도 부착 ◆ 피난방법과 설명이 부착됨 ◆ 피난도우미가 지정되어 있음	◆ 노유자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의5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39-44쪽 참고
	(12)		◆ 유도등은 상시 점등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유도등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 식별이 쉬운 상태임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13)		◆ 비상조명등 위치표지가 부착된 곳에 비상조명등 비치 ◆ 비상조명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됨	◆ 바닥 면적이 4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14)		◆ 피난층과 11층 이상 제외 모든 층에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 신체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 설치 ex)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서는 승강식피난기가 적응성 있음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45-50쪽 참고
	(15)		◆ 설치된 피난기구 고정 장치에 힘을 가하였을 때 움직임이 없음 ◆ 설치위치 표시 및 사용방법 표시가 부착되어 있음	◆ 소방청 고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16)		◆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 의무 시설*의 경우,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음 ◆ 비상구 문이 잠겨있지 않음 ◆ 대피로에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지 않음	◆ 「건축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 의무 시설 : 3층 이상 층이고,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200㎡ 이상인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 「소방시설법」 제10조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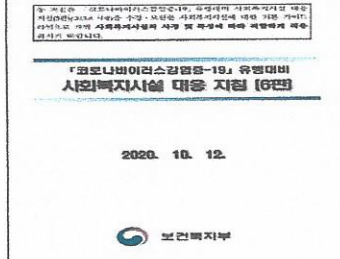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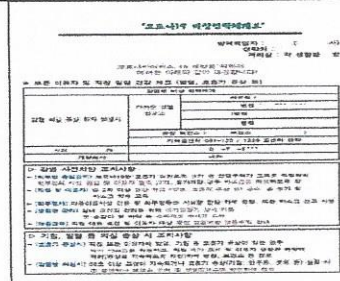
분야	항목	내 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3] 소방 안전 관리	(17)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서 규정에 맞게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있음 ◆ 방화셔터(방화문)이 화재감지기 작동에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임 ◆ 방화셔터 작동 개소주변에 적재물이 없음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참고 ◆ 대상 :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 ◆ 방화구획,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외부 피난 가능한 연결 복도 중 하나 설치
	(18)		◆ 제연설비를 규정에 맞게 갖추고 있음	◆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의 5호 가목 및 소방청 고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19)		◆ 배연설비를 규정에 맞게 갖추고 있음	◆ 6층 이상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거주 시설은 층수와 무관하게 배연설비 설치의무 ('15.9.22 이후)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참고
	(20)		◆ 시설 내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 카펫, 종이벽지 외의 벽지, 전사용 합판 또는 섬유판 등이 방염처리가 되어 있음 ◆ 침구류, 소파, 의자의 경우 방염처리 권고할 수 있음	◆ 「소방시설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참고
	(21)		◆ 건축물 단열 시공법을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으로 했을 경우 단열재,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로 사용 ◆ 외단열 공법이 아닌 내단열 시공의 경우 해당 없음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참고
	(22)		◆ 아래와 같은 난연재료를 사용하였음 ◆ 내부 마감재가 노후화 되지 않았음	

분야	항목	내 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불연 재료 - 섬유강화 시멘트판 - 유리섬유 혼입 시멘트판 - 섬유 혼입 규산 칼슘판 - 석고보드(두께 12mm 이상) 준불 연재료 - 석고보드(두께 9mm 이상) - 목편 시멘트판 - 경질 목편 시멘트판 - 목편 시멘트판 난연 재료 - 난연 합판(두께 5.5mm 이상) - 석고보드(두께 7mm 이상)	
	(23)		◆ 필로티 구조로 건물 1층 전부 또는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필로티 구조일 경우 건축물 연면적 1,000㎡ 미만 여부 표시	
	(24)		◆ 기계실 등 접근 제한 장소에 문이 잠겨 있음	
[4] 전기 안전 관리	(1)		◆ 누전차단기가 사진과 같이 설치되어 있고, 600V 이하 분배전반에 설치되어 있음 ◆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시험 버튼을 눌렀을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함	
	(2)		◆ 냉난방설비의 플러그는 전용 콘센트에 삽입되어 있어야 함 ◆ 멀티탭 정격전류에 맞게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음 ◆ 노출전선 중 전선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없음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124~125쪽 참고
	(3)		◆ 전기 정기안전점검을 받고 있음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12조 등 참고
[5] 가스 안전 관리	(1)		◆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및 가스누출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함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20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참고

분야	항목	내 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2)		◆ 가스배관에 손상이 없으며, 정기적으로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3)		◆ 보일러와 배기통 연결부위에 뚫린 부분 등이 없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4)		◆ 저장용기와 화기취급 장소와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용기 보관 장소에 환기가 잘 이루어짐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150쪽 참고
	(5)		◆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받고 있음	◆ 「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등 참고
[6] 동절기 재난 대응 대책 (9)	(1)		◆ 시설 외형을 정기적으로 육안 점검 함 ◆ 시설 내 위험물 저장시설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함 ◆ 비닐하우스 가입시건물 등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함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297쪽 참고
	(2)		◆ 폭설로 긴급 대피를 위한 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있음 ◆ 피난안전지역까지 안내할 피난도우미를 지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39-50쪽 참고
	(3)		◆ 폭설로 인한 고립을 대비하여 비상식량과 의약품을 준비하고 있음	
	(4)		◆ 폭설 제설장비(제설작업차량, 적사함,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삽, 빗자루 등)를 갖추고 있음 ◆ 긴급 폭설 제설대책을 갖고 있음 (외부 지원체계 등 연락망 포함)	
	(5)		◆ 난방용 보일러에 대한 동파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 태양열 집열판이 설치된 시설은 집열판 관리를 잘하고 있음	

분야	항목	내 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 온수 탱크 등에 대한 보온관리가 잘되고 있음	
	(6)		◆ 겨울철 난방용 전열기 사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기안전에 관한 교육이 수시로 실시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126-127쪽 참고 ◆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시설은 시설 내 안전담당자 책임 하에 교육 실시
	(7)		◆ 가스중단에 대비한 비상연료를 준비하고 있음 ◆ 도시를 벗어난 시설의 경우, 연탄이나 목재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음	◆
	(8)		◆ 재난발생 정보 수집절차가 계획되어 있음 ◆ 항상 재난방송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 ◆ 재난방송 청취와 전파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정되어 있음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257쪽 참고
	(9)		◆ 관련 소방서 및 지자체와 재난극복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관할 협력기관과 수시로 연락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음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58-63쪽 참고
	(1)		◆ 건축물이나 건물 주변에 지반 침하가 없거나 바닥 포장 상태가 양호함 ◆ 하중에 의한 천장 처짐 및 벽면 기울임 현상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음 ◆ 수분 유입에 의한 누수흔적 및 백태가 발생하지 않음	◆ 「국민생활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참고 ◆ www.sfms.or.kr(소규모 취약시설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음
	(2)		◆ 철근 부식 및 노출 등이 발생하지 않음 ◆ 콘크리트 벗겨짐 또는 떨어짐 현상이 없음(콘크리트의 박리 깊이가 1.0mm 이상, 박락 깊이가 20mm 이상인 경우 위험) ◆ 창호가 기울어진 부분이 없고, 단열기능이 있음	
	(3)		◆ 지붕, 옥상배수관 막힘 부분 없음 ◆ 홈통 또는 주변의 하수구, 배수구 막힘 부분 없음	

분야	항목	내 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4)	 	◆ 담장에 균열 및 침하 발생하지 않음 ◆ 옹벽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전도 (위치 변경이나 뒤집어짐) 등의 증상이 보이지 않음	
	(5)		◆ 시설물 준공 시 내진 설계 적용이 되었는지 여부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참고(행정안전부, '20.7)
	(6)		◆ 시설물이 내진 설계 적용이 안된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예' 체크 1)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내진 성능이 확보된 경우이거나, 2)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내진 성능이 확보된 경우 ◆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참고(행정안전부, '20.7)
	(1)		◆ 음식조리 시 위생관련 복장을 모두 갖추고 일함 ◆ 작업 장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166쪽 참고
	(2)		◆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재료를 사용하여 조리함 ◆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및 식품을 제공하지 않음	◆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시행규칙 별표24 참고
[8] 급식 위생 안전 관리	(3)		◆ 재료별 저장조건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음 ◆ 음식물 저장용기의 관리상태가 양호함	◆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시행규칙 별표25 참고

분야	항목	내 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8] 급식 위생 안전 관리	(4)		위생을 해치는 벌레 등의 혼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구를 사용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5 참고
	(5)		칼이나 도마 등 조리기구를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하여 사용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4 및 별표25 참고
	(6)		조리장 내 구비되어 있는 수세 시설과 소독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5 참고
	(7)		- 수질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고 있음 -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되어 있는 폐기물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5 참고
[9] 감염병 관리 대책	(1)		감염병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마련(현행화)하고 있음	
	(2)		감염병 관련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보건소-시군구 및 시도)를 구축하여 현행화하고 있음	
	(3)		종사자, 이용자, 입소자 등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음	

분야	항목	내 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4)		◆ 종사자, 이용자, 입소자 등 예방수칙 및 감염대응지침 등 교육(전파)을 실시함	
	(5)		◆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확보 및 보유 여부하고 있음	
	(6)		◆ 시설 내 주요공간 주기적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를 하고 있음	
	(7)		◆ 시설 내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대기)할 수 있는 격리 시설(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8)		◆ 식당 내 가림막 설치 또는 좌석 간 띄워 앉기, 한 줄로 앉아 식사 가능토록 표시되어 있음	

화재대처

■ 불을 발견했을 때

1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 때

-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 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2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 불길의 천정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양동이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끄도록 합니다.
- 불길이 커져서 대피해야할 경우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합니다.
-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 실내대피 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



비상구 활용



완강기 활용



경량칸막이 활용



실내대피공간 활용

☞ 1992년 10월 이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피난시설과 기구가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알아두시대! 완강기 사용법



1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2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3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4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완강기 통 안의 구성품을 먼저 확인합니다.

1.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2.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3.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4.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소방관이 전하는 안전상식

■ 119 신고절차

본인의 위치(주소) ▶ 현재상황 ▶ 부상여부 ▶ 상황요원 안내에 따라 행동



일반전화

- 1 수화기를 들어 발신을 확인
- 2 순서대로 119 숫자 누르기
- 3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



휴대전화

- 1 119 숫자 누르기
- 2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



인터넷

- 1 인터넷 접속
- 2 신고하기 버튼 누르기
- 3 성명 등 필수인적사항 기록
- 4 사고개요 정확히 기록
- 5 등록여부 확인



공중전화

- 1 수화기 들기
- 2 긴급버튼(적색) 누르기
- 3 119 숫자 누르기
- 4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

■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자세

☞ 대류현상에 따라 뜨거운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1 손수건, 옷 등을 이용하여 호흡기 (코와 입) 보호한다



2 자세를 낮춘다



3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는다



4 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한다

■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 심폐소생술은 의우기 쉽도록 4단계 절차로 기억합니다.



1 의식 및 호흡확인



2 119 신고 및 AED 요청



3 가슴 압박 30회



4 인공호흡 2회

■ 알아둬시다! 은연중에 나를 지켜주고 있는 소방시설



재난설비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주방용자동소화기

화재진압

■ 소화기 사용법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 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1. 소화기를 가져와서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2.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
3. 손잡이를 꼭 움켜쥜다.
4.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쏜다.

■ 소화전 사용법



2인 1조로
사용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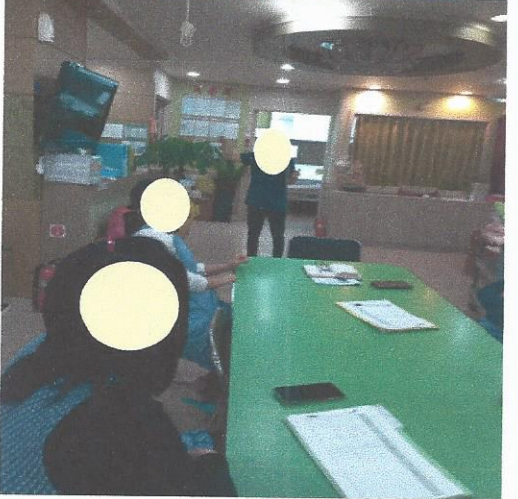
1. 2명 중 1명이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2. 호스를 밖으로 꼬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관창)을 잡고 방수자세를 취한다.
3. 다른 한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한 후 뛰어가서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4.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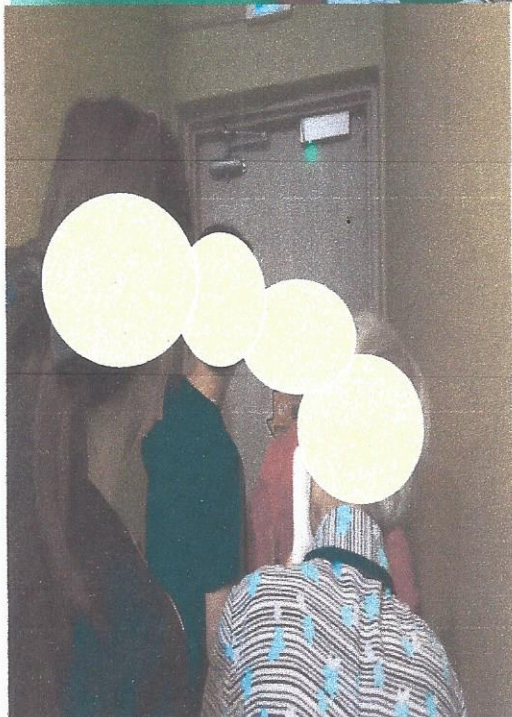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얼굴 화상방지와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1.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2. 얼굴(눈, 코, 입)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싸도록 합니다.
3. 바닥에 엎드린 후
4. 몸을 뒹굴어서 불이 꺼지도록 합니다.







참석자 명단 및 서명

2021.12.07

NO	직책	성명	서명	날짜
1	시설장	양재숙		21.12.07
2	사회복지사	천양수	천 양수	21.12.07
3	간호조무사	김수지	김 수지	21.12.07
4	요양보호사	김정숙	김정숙	21.12.07
5	요양보호사	엄춘녀	엄 춘녀	21.12.07
6	요양보호사	박영애	박 영애	21.12.08
7	요양보호사	박예순	박 예순	21.12.07
8				
9				
10				
11				
12				